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77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이병도, 김성준, 박승진,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한 신, 홍국표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요구,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징계대상 및 징계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미비로 인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체 징계를 통한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3. 7.)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징계결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자정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정함.(안 제88조의2 및 별표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징계기준) 의원의 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계기준(제88조의2 관련)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 적용기준  |
|--------------------------|--|---|
| 1. 품위유지의무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면허정지</li> <li>2) 면허취소</li> <li>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li> <li>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li> <li>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li> </ul> </li> <li>○ 범법행위(금고 미만 확정판결)</li> <li>○ 성폭력, 성희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공개사과</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br/>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li> <li>출석정지, 제명</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li> </ul> |
| 2. 청렴의무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수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li> <li>2)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li> <li>3)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li> </ul> </li> <li>○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li> <li>○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권 개입 등 금지 및 대가 수수 금지 위반</li> <li>○ 알선·청탁(인사청탁 포함) 등 금지 위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출석정지, 제명</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ul>  |
| 3. 이해충돌 방지 의무(회피의무 등)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위반</li> <li>○ 영리 행위 신고의무 위반</li> <li>○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회피 의무 위반</li> <li>○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br/>(상임위원회 변경)</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ul>   |
| 4. 각종 신고 의무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및 재산 불성실신고</li> <li>○ 겸직 허위신고(미신고, 허위신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공개사과</li> <li>경고, 공개사과</li> </ul>  |
| 5. 겸직금지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금지 위반</li> <li>○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li> </ul>  |
| 6. 회의 무단 불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 없는 회의 무단 불참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li> </ul>  |
| 7.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li> <li>○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li> <li>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li> </ul>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lt;신 설&gt;</u> | <u>제88조의2(징계기준) 의원의 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u> |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징계결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자정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재정분석담당관 |
| 담 당 관     | 주병준     |
| 추계세제팀장    | 김중헌     |
| 추 계 분 석 관 | 김지혜     |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